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

제출년월일 : 1996.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조직의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정원을 보강하고,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및 가스담당부서의 기능 강화와, 상수도 수질 관리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신설부서인 지역개발과에 미탄면 지방건축8급 1인, 봉평면 지방행9급 1인, 진부면 지방농업9급 1인을 각각 감하여 직급 및 직렬조정 후 보강(안 제2조)
-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 7급(지방행정 또는 토목) 1인 순증, 평창읍 기능10등급(기계) 1인을 감하여 7급(지방행정 또는 지방건축) 1인을 증원(안제2조)
- 다. 상공과 상공가스계에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7급(지방기계 또는 지방화공) 1인 순증(안제2조)
- 라. 도시과 수도계에 수질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지방보건9급 1인을 감하여 도시과 지방보건9급 1인 증원(안제2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24”를 “231”로 하고, 제3호중 “97”을 “96”으로 하며, 제4호중 “240”을 “2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24</u>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기관 : <u>97</u> 인 4. 사업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40</u> 인 | <p>제2조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31</u> 인 2. (현행과 같음) 3. 직속기관 : <u>96</u> 인 4. (현행과 같음)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36</u> 인 |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9 |
|------|----|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방법원에 대한 명칭이 지도원으로 개칭되고 근무상한 연령도 58세로 늘어 났으나 우리 군에는 한시적 정원인 방법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기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4조의 2의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 조항 삭제

나.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1종 방법원란과 근무상한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 구 분 | 경 노 무 | 비 고 |
|--------|-------|-----|
| 직 명 | 사 환 | |
| 근무상한연령 | 58 세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p>제4조의2(방법원의 파견)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중 방법을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p> <p>[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1 종</th> <th style="width: 15%;">2 종</th> <th style="width: 20%;">경노무</th> <th style="width: 50%;">근무상한연령</th> </tr> </thead> <tbody> <tr> <td>방법원</td> <td></td> <td></td> <td>53 세</td> </tr> <tr> <td></td> <td></td> <td>사 환</td> <td>58 세</td> </tr> </tbody> </table> <p>비고 : 방법은 이 조례(89호·5·24 조례 제1199호)시행으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 1 종 | 2 종 | 경노무 | 근무상한연령 | 방법원 | | | 53 세 | | | 사 환 | 58 세 | <p><삭 제 ></p> <p>[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 상한 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경노무</th> <th style="width: 34%;">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직 명</td> <td>사 환</td> <td></td> </tr> <tr> <td>근무상한연 연</td> <td>58 세</td> <td></td> </tr> </tbody> </table> <p><삭 제 ></p> | 구 분 | 경노무 | 비 고 | 직 명 | 사 환 | | 근무상한연 연 | 58 세 | |
| 1 종 | 2 종 | 경노무 | 근무상한연령 | | | | | | | | | | | | | | | | | | | |
| 방법원 | | | 53 세 | | | | | | | | | | | | | | | | | | | |
| | | 사 환 | 58 세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경노무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직 명 | 사 환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상한연 연 | 58 세 | | | | | | | | | | | | | | | | | | | | |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83 |
|------|----|

제출년월일 : 1996.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중복이나 유사직제를 통·폐합하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분야와 날로 증가하는 관광·문화체육분야의 기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고를 위한 기구로 개편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능조정(안제3조)
- 나. 적극적인 주민봉사를 위해 민원봉사실 신설(안제4조)
- 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로 지역개발과 신설(안제7조)
- 라. 날로 늘어나는 관광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관광과 관련있는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관광문화과 신설(안제8조)
- 마. 기능이 쇠퇴하거나 조정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업무가 유사한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통폐합하여 복지과로 조정(안제10조)
- 바. 산업과·지역경제과를 농정과·상공과로 명칭변경(안제12조, 제13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평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민원봉사실·내무과·재무과·지역개발과·관광문화과·지적과·복지과·환경보호과·농정과·상공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3.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4. 행정실적 심사분석
5.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6.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7.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교역 및 해외교류지원과 국제 자매결연업무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10.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영
11.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2. 자체결산심사
13. 전시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1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군정시책의 홍보 선전
16. 지역홍보대책위원회 운영
17. 사회단체신고 및 지도감독
18. 유선방송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군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기록보존
20. 군보발간에 관한 사항
21. 군사 편찬 발간
22. 국·도·군정 영상제작 및 배포
23. 기자실운영 및 기자재 관리
24. 군정관련 보도사항의 정리·분석
25.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사항
26.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27.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28. 공무원 비위조사
29.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30.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31.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32. 조례제정 및 개폐안 심사, 의회상정, 공포
33.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
34. 법령자치법규등의 질의해석 및 조정
35. 법령집, 관보보급에 관한 사항
36. 소송·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
37.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
38. 통계(일반통계, 농업통계, 경제통계)업무
39. 그 밖에 기획·예산·홍보·감사·법무·통계행정에 관한 사항

제4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실의 설치 운영 및 민원공무원 복무기강 지휘 감독

2.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3. 일반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4.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5.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 주관, 국민편의 시책개발
6. 민원1회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7. 1회방문 상담창구·설치운영
8.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보완 개선
9. 복합 인·허가 민원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10.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감독
11.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2. 가로등 사후 관리
13. 병무업무
14. 공익근무요원관리
15. 그 밖에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정·현원 인사관리
2.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3.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5. 선거 및 국민투표
6. 반사회 운영 지원
7. 하부행정기관 지도
8. 서무
9. 각종회의 및 행사, 의전관리
10. 복무단속
11. 문서수발 통제
12. 보안업무
13. 공무원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14. 행정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팩시밀리 시설운영 유지관리
17.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18. 군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19. 행정전산화계획 수립집행
20. 그 밖에 다른과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의 징수
3. 세출예산 경리 결산
4. 공채, 국채, 금융
5. 군 금고의 감독
6. 물품출납보관 처분
7. 원천징수 불입
8.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 체비지 및 공공용지 관리 처분
10. 지방세 세원조사
11. 법인세무조사
12. 지방세 자료수집 및 정보활동
13.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
14. 그 밖에 재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지시사항 전파 및 관리
2. 군수공약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4. 국제화 시책개발 연구 및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료수집 분석
5.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연구(WTO, UR대책, 농어촌구조개선, 경영소득사업등)
6. 건설, 건축 등 군 및 읍·면 발주 공사의 관리·조정·감독등 부실시공 방지
7. 읍·면 발주공사 설계 지도 감독
8. 비 사업부서 발주공사 설계용역 납품검토 및 현장 기술 감독
9. 사회진흥 종합계획수립 추진
10.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육성지도
11. 새마을금고, 문고업무 지원 육성
12.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13. 읍면복지회관 운영 및 마을회관 창고 유지 관리
14. 범죄없는마을 육성
15. 국민건강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16. 국민운동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17. 반 건의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관리
18.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관광지(단지) 개발 및 조성계획 조정
3. 관광실태 조사·연구
4.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 육성
5. 관광안내 및 홍보
6.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관광지 자연환경 보존 및 정화사업
8. 관광협회 지도감독
9. 자연공원의 개발 및 지도감독
10. 삭도, 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관리 및 지방문화예술의 육성발굴

12. 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리
13. 문화원 운영 관리
14. 공연장 지도감독
15. 종교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도감독
16.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7.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18. 국민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19. 국제 및 국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추진 및 준비에 관한 기획 조정
20.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육성
21.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22. 그 밖에 관광진흥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제9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업무의 기획·조정
2.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고
3. 택지소유 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4.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 업무
5.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6.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운영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검사 및 이동지정리
9.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10. 지적장비 운영·관리
1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
12. 지적전산화 및 통계관리
13.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업무
14. 지적공부 등본·열람 및 지가열람 확인원 발급

15.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16. 외국인 토지 및 비법인 등록번호관리
17. 건축물 대장정리 및 발급
18. 그 밖에 토지 및 지적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과) 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노임취로사업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3.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및 직업훈련
4. 행여부랑인 보호 및 사망자 처리
5.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6. 장애인 보호관리
7. 보사등원계획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9. 환경위생
10. 부정불량식품 단속
11.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12.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13.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독려지원
14.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및 협조지원
15.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16. 노인복지대책
17.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18. 가정의례 준수지도
19.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증진
21. 부녀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22.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23.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

2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25.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26. 부랑인 방지
27. 고아·기아·부랑아·정신박약아의 보호
28. 청소년대책 업무의 종합기획
29.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30.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31. 청소년대책
32. 청소년진로 생활상담지도
33. 불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34. 기타 청소년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환경보전 및 홍보·계도·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5.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감독
6.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7. 수질·대기·자연환경 보전
8. 먹는물 관리
9. 유해화학물질 관리
10. 폐기물관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11. 분뇨종말처리장 지도관리
12. 분뇨, 오수정화시설 지도 감독 및 공중화장실 관리
13. 일반쓰레기, 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14. 생활쓰레기수거 처리 및 업소감독
15.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16. 쓰레기증량제 및 폐품자원화운동 추진

17. 그 밖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12조(농정과) 농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3.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4. 농업단체의 지도육성
5. 식량작물증산 장려
6.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병충해 방제
7.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8. 농산물유통기획 총괄
9. 농산물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10. 특용 및 원예증산 장려
11.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2.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13.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14.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15. 정부의 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6.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상공과) 상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5. 농공단지조성 및 육성지도
6. 중소기업 육성지도

7.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8.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9. 노동 및 노정
10. 노동 및 사회사업단체의 지도 감독
11. 실업대책
12. 광공업등록 및 광산개발업무
13.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14. 시장개설 및 관리
15. 공산품 품질관리
16.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17.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 충전) 허가 및 변경허가
18. 고압가스(특정설비제조업등) 허가 및 지도감독
19.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20. 액화석유가스(용품등) 허가 및 지도감독, 사용신고
21.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22.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23.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24. 시공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25.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
26.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명령
27.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8.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29.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30. 주차장 관련업무
31.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업무
32.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상공가스와 교통에 관한 사항

제14조(축산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조정
2. 축산자금융자 및 사후관리
3. 축산물의 유통개선
4. 가축개량 및 종축보급관리
5. 중소가축장려사업
6. 내수면개발 및 자원보호 관리
7. 내수면 수산제조업 관계사무
8. 낙농단지 육성
9.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10. 대단위(기업)육장 육성 및 관리
11. 가축위생 및 공수의 감시
12. 축산물 작업장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
13. 축산물 유통 및 단속
14. 육장 환경위생
15. 가축위생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시행
2.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 통계
3. 양묘 및 조림사업계획 실행
4. 육림 및 산림보육 관리지도
5. 무궁화, 야생화목류, 가로수식재관리
6.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7.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8.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9. 주요도로 주변정비 사업
10. 목재수급 조절 및 벌채사업 실행

11. 임업진흥 촉진지역 및 특수지역개발
12. 산불방지
13. 산림병해충 방제
14.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구제
15. 수렵장 운영관리
16. 화전정리지 관리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17. 임산물 반출관리(극인관리 포함)
18. 산지정화 및 산행질서 지도·단속
19.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수목원 조성관리
20.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21. 임산물가공·이용 및 유통지도(제재소, 가공공장 등)
22. 임업관계 단체육성지도(산림조합, 독립가, 후계자, 푸른숲선도원 등)
23. 산주교육 및 임업기술 지도
24. 그 밖에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2. 치수사업 계획수립 실시
3. 수자원 개발
4. 소규모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 및 복구
6. 도로·교량개발 계획수립 실시와 허가 및 공사감독
7. 접도구역 관리
8.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
9.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10. 토지이용계획수립
11. 농업용수개발
12. 경지정리 및 개간
13. 관개시설 개보수

14. 개간허가 및 지도
15. 각종 농지개량조사의 집행감독
16. 정주권개발 업무
17.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18. 공사의 시행 감독
19. 도시계획 구역외지역 가로등 시설
20.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5. 택지개발업무
6.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업무
7. 옥외광고물 관리
8. 소도읍 개발업무
9. 오지개발사업
10. 취약지 대책
11. 온천지구지정 및 개발관련업무
12.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13. 도시시설물관리 업무
14. 건축허가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1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
16.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관리
17. 농어촌주거환경개선
18. 주택자금관리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19.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20. 상·하수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21. 수도료징수 및 무허가 수도 단속
22. 수원지 유지관리
23. 용융수 수질관리
24. 간이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25.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18조(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수립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3. 민방공계획 수립
4.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응
6. 비상대책업무
7.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9.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0.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11. 대형사고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2. 취약지대책
13. 그 밖에 민방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계 설치 및 사무분장)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항중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장, 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상공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평창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③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관광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체육계장이 된다"로 한다.

④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새마을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하며,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⑤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⑥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을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으로 하며, 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⑦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상공과장"으로 한다.

“살맛나는 강원건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 (0361) 54-2011-2223, 2228 / 전송 담당 최명규

문서번호 지방 12200-899
 시행일자 1996. 7. 9 (31)
 경유
 수신 평창군수
 참조 내무과장

| | | | | |
|-------|----------|------|-------|--|
| 선결 | | | 지 | |
| 접 | 일자 시간 | | 시 | |
| 수 | 번호 | 2687 | 결 | |
| 처 리 과 | | | 재 · 공 | |
| 담 당 자 | | | 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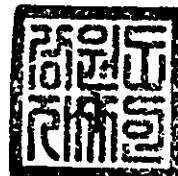
제목 평창군 조직개편(안) 승인 통보

1. 평창군 내무 12200 - 1727 ('96. 7. 8)호 관련임
2. 위호로 승인 신청한 평창군 조직개편(안)을 별첨과 같이 승인 통보하니

관련사항 보완후 조례등 자치법규 개정·공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첨부 : 1. 조직개편(안) 검토결과 조치사항 1부.
 2. 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III. 檢討結果 主要措置事項

| 事 案 別 | 措 置 事 項 |
|---------------------------|--|
| ○ 觀光體育課 名稱變更 | ○ '觀光體育課'는 '觀光文化課'보다 좁은 개념이며, 道の조직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課명칭을 재검토 조정 ⇒ '觀光文化課'로 명칭변경(권고) |
| ○ 環境保護課를 環境課로 名稱 變更 | ○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環境課'보다는 기존의 '環境保護課'가 타당함 ⇒ 기존의 '環境保護課'로 존치검토(권고) |
| ○ 都市課의 開發係 設置에 대하여 | ○ 地域開發課를 신설하고 都市課에 開發係를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됨 ⇒ 都市課의 開發係를 명칭변경 또는 地域開發課로 調整(권고) |
| ○ 邑面機構調整 | ○ 평창읍의 진흥계를 폐지하고 진부면의 건설계를 신설함 ⇒ 승인 |
| ○ 5級定員職列 調整 | ○ 5급정원 직렬조정 1명 ⇒ 승인 |

5 級定員 (職列) 調整承認書

| 기관별 | 직 위 명 | 직 급 | 승인인원 | 비 고 |
|-------------|-------|----------------------|------|-----|
| 평창군 (본청) | 산업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 △1명 | |
| | 농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 1명 | |
| | 계 | | - | |